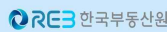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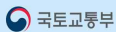


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

□ 안내사항

- 조사기간 : (방문조사) '23. 9. 1. ~ 9. 15. (15일간)
(인터넷조사) '23. 9. 1. ~ 9. 8. (8일간)
- 조사대상 : 표본으로 선정된 1,590가구의 15세 이상의 가구원
- 조사내용 : 복지, 주거·교통, 문화·여가, 교육, 소득·소비, 일자리·노동, 용인시 특성 항목
- 조사방법 : ① 가구방문조사 ② 인터넷조사 중 선택 가능
 - (방문 조사)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
 - (인터넷조사) 담당 조사원에게 인터넷 조사 참여번호 받아 https://survey.k-stat.go.kr/gg2023_i 사이트에서 조사 응답
- 응답혜택 : 조사 응답가구에 답례품 제공
- ※ 문의 : 용인시 정책기획과(☎031-324-2058)

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안내



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('24년 5월 31일까지)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

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!



! 신고 의무인 !

임대인 +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(임신고 가능)
※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

! 신고 대상 !

- 아래 ①, ②,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
- ① '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- ②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-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

! 신고 서류 !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
! 신고 방법 !

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<http://rtms.molit.go.kr>) 온라인신고
※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

! 제재 사항 !

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-2949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<http://rtms.molit.go.kr>)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(읍면동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이전

□ 안내사항

- 업무개시 : 2023. 8. 28.(월)
- 이전위치 : 용인미르스타디움 1층 (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)
 - ※ 기흥·수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업무종료
 -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차량등록사업소로 통합업무
- 찾아오시는 길 : 용인미르스타디움 남문으로 진입
↳ E1 주차장 이용(남문 진입 후 오른쪽 첫 번째 주차장)
- ※ 문의 :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(☎031-324-4578)

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

용인 르네상스



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대비훈련

일시 2023. 9. 7.(목) 14:00 ~ 장소 용인 미르스타디움



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부당사용 금지



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!
장애인전용주차구역! 장애인을 위해 비워주세요!



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하고, 주차가능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

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

과태료 10만원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

과태료 50만원

장애인차량표지 양도, 대여,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

과태료 200만원

- ▶ 차량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
- ▶ 가족 혹은 지인의 표지를 대여해 사용하는 행위
- ▶ 표지를 위·변조해 사용하는 행위
- ▶ 회수/폐기 처분된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
- ▶ 장애인의 주소 변경으로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
- ▶ 차량번호와 주차표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

법적근거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),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(과태료)

장애인전용주차구역! 도덕적 양보가 아닌 법률적 권리입니다.

용인특례시 / 행정안전부 지정 경원세상